

## 7 「위험물안전관리법령」상 위험물의 수는?

● 황산      ● 질산      ● 염산      ● 인산      ● 불산

- ① 1 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 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 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

해설 ◯

- 비위험물 : 황산, 염산, 인산, 불산
- 위험물 : 질산(6류)

《★19년 소방위》

## 8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5류 위험물로만 이루어진 것은?

- ① 폐옥소이황산염류,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 
 ② 금속의 아지화합물, 질산구아니딘  
 ③ 염소화규소화합물, 할로젠간화합물  
 ④ 아질산염류, 차아염소산염류

해설 ◯

## ◆ 시행규칙 제3조(위험물 품명의 지정)

- ② 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금속의 아지화합물
  2. 질산구아니딘

정답 ◯ 7. ① 8. ②

〈★18년 소방위〉

7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에 대한 ( )안의 적합한 수를 모두 합한 수는?

사업소의 구분	화학소방자동차	자체소방대원의 수
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( )만배 이상 ( )만배 미만인 사업소	( )대	15인

- ① 1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3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5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75

해설 ◦

- ◆ 시행령 [별표 8]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〈★위 25·22·20·18년〉〈★장 18년〉  
↳ 화학소방차 1대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.

사업소 구분	화학소방자동차	자체소방대원의 수
3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	3대 포수용액차(2/3) → 2대	15인

7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차에 대한 ( )안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?

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최소 ( )대를 두어야 한다.
--

- ① 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

해설 ◦

-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화학소방차 4대를 두어야 한다. (영 별표 8. 제4호)
-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(규칙 제75조제2항)

- ◆ 시행령 [별표 8]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〈★위 25·22·20·18년〉〈★장 18년〉  
↳ 화학소방차 1대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.

사업소 구분	화학소방자동차	자체소방대원의 수
4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	4대 포수용액차(2/3) → 3대	20인

정답 ◦ 70. ④ 71. ③